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국가적 정책과제로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6859호, 2019. 12. 31. 공포)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소재·부품·장비 업종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선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 선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의 인수·합병등에 관한 확인을 위한 확인요청서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8조).
- 마. 융합혁신지원단 지원사업의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융합혁신지원

단의 구성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경비지원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경비지원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바.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개발 관련 실증시험·성능검증 등을 받기 위한 실증시험·성능검증신청서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사.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지정신청서 및 신청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7조).

아. 기업간 협력모델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제출하여야 하는 경쟁력강화 계획서 및 신청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8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 부처 협의 예정임

라. 기 타 : 1)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별첨

2) 국무조정실과 사전 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 없음

3) 입법예고(2020.2.7.~3.17.)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부품·장비의 범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소재·부품·장비를 말한다.

제3조(특화선도기업의 선정 신청 등) ① 영 제21조에 따라 특화선도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화선도기업 선정 관련 전략계획서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그 밖의 신청인은 「상법」 제447조

에 따른 재무제표

3. 특허출원등록증(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투자조합 등의 투자확인서(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화선도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의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확인서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 감

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그 밖의 신청인은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문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이 전문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소재·부품·장비분야의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선정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으로 선정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신청서에 해당 기업의 성장성과 유망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투자조합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

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재·부품·장비전문투자조합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이하 “투자기관협의회”라 한다)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투자조합규약

2. 전문투자조합원 명부

3. 전문투자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전문투자조합은 등록을 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재·부품·장비전문투자조합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투자기관협의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투자기관협의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재·부품·장비전문투자조합등록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소재·부품·장비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의 비치) ① 투자기관협의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29조제5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문투자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3. 전문투자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4. 해당 전문투자조합의 존속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등록원부는 자기디스크 등으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8조(인수·합병등 확인요청서)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수·합병등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인수·합병등 확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2의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한 인수·합병 등 관련기업의 현황 자료에 관한 서류

2. 인수·합병등 계획서 또는 인수·합병등의 계약서 사본

제9조(투자기관협의회설립신청)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투자기관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설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원 명부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

4.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재무구조에 관한 명세서

제10조(사업화 지원요청 등)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사업화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계획서
2. 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개발성과를 직접 사업화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개발성과의 사업화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융합혁신지원단 지원요청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화선도 기업등이 소재·부품·장비융합혁신지원단(이하 “융합혁신지원단”이라 한다)에 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재·부품·장비융합혁신지원단 지원요청서를 융합혁신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의 지원사업을 위한 경비 지원)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은 지원사업계획서 및 지원사업계획서에 대한 융합혁신지원단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사업계획서는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이 지원을 요청한 지원대상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은 지원대상기관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보고서 및 지원금사용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원사업의 경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실증시험·성능검증 신청 등)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실증시험·성능검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실증시험·성능검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재·부품·장비의 개발배경·연혁·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2. 소재·부품·장비의 성능·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3. 실증시험·성능검증 대상 소재·부품·장비의 운영절차서
4. 실증시험·성능검증 항목·횟수·방법, 이와 관련한 원료·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5. 국내외의 사용실적(사용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내외의 산업재산권(출원을 포함한다) 또는 신청인이 해당 소재·부품·장비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6.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 기술 조사보고서
7. 실증시험·성능검증을 받으려는 사항 및 현장평가방법을 기술한 서류(기술검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실증시험·성능검증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4조(실시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추진계획서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전문인력·기술능력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56조에 따라 실시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소재전문기관 등)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소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2. 소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연구인력 및 장비·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소재 관련 기술분야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을 것
- ② 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연구성과물”이란 다음 각 호의 성과물을 말한다.
 1. 최종 연구보고서
 2. 최종 연구결과물의 시제품(試製品)

③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소재전문기관에 연구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이하 “연구성과물제출자”라 한다)는 연구사업의 수행을 끝마친 후 90일 이내에 제2항의 연구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성과물과 관련하여 소송 또는 특허심판 등 관련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제품이 훼손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성과물을 기간 내에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연구성과물제출자 및 해당 연구성과물을 제출받아야 하는 소재전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해당 연구성과물의 제출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교육 및 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 및 훈련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전문기술인력 양성·훈련사업 계획서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전문인력·기술능력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 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71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지정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7조(특화단지 지정신청) 영 제76조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특화단지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영 제76조제2항의 특화단지 지원계획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협력모델의 신청)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협력모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협력모델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법 제49조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에 따른 경쟁력위원회 실무추진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규제개선 신청 등)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협력모델 규제개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에 따른 경쟁력위원회 실무추진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협력모델 경쟁력강화 계획서
2. 개선을 신청하는 규제의 내용과 신청사유에 관한 설명자료
3. 해당 규제개선이 협력모델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자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 소재·부품의 범위(제2조 관련)

분 야 (한 국 표 준 산업분류번호)	적용범위(소재·부품)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13)	면 방직사	13101
	모 방직사	13102
	화학섬유 방직사	13103
	연사 및 가공사	13104
	기타 방직사	13109
	면직물	13211
	모직물	13212
	화학섬유직물	13213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13219
	편조 원단	13300
	솜 및 실 염색 가공품	13401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품(의복 및 직물 제품에 염색한 것은 제외한다)	13402
	날염 가공품(의복 및 직물 제품에 날염한 것은 제외한다)	13403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품	13409
	부직포 및 펠트	13992
	특수사 및 코드직물	13993
	표면처리 및 적층직물	13994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13999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 (17)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17122
	위생용 원지	17125
	기타 종이 및 판지	17129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석유화학계 기초화학 물질	20111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20119
	산업용 가스	20121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핵연료 가공품은 제외한다)	20129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20131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20132
	합성고무	2020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20202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20203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가정용 화학 살균 및 살충제는 제외한다)	20321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가정용 생물 살균 및 살충제는 제외한다)	20322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20411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그림물감은 제외한다)	20413
	계면활성제	20421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20491
	접착제 및 젤라틴	20493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20499
	합성섬유	20501
	재생섬유	2050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의약품 화합물 및 항생물질	21101
	생물학적 제제	2110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타이어 및 튜브	22111
	고무 패킹류	22191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22192
	그 외 기타 고무제품(고무매트, 고무보트, 기타 고무제품은 제외한다)	22199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22211
	플라스틱 필름	22212
	플라스틱 시트 및 판	22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22214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22241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2224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주방용품, 가구용 제품, 헬멧, 사무 및 문구용품, 기타플라스틱 제품은 제외한다)	2229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판유리	23111
	안전유리	23112
	기타 판유리 가공품	23119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23121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23122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23129
	정형 내화 요업제품	23211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2321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세면기, 변기, 욕조,	23222

	기타 위생도기제품은 제외한다) 석회 및 플라스터(플라스터는 제외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연마재 비금속광물 분쇄물 암면 및 유사 제품 탄소섬유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아스팔트 성형제품은 제외한다)	23312 23991 23992 23993 23994 23995 23999
	제1차 금속 제조업(24)	24113
	합금철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24123
	철강선	24131
	주철관	24132
	강관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2419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도구 제외)(25)	그 외 기타 1차 철강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24290
	선철 주물 주조제품	24311
	강 주물 주조제품	24312
	알루미늄 주물 주조제품	24321
	동 주물 주조제품	24322
	기타 비철금속 주조제품	24329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25121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25122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25123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25130
	무기 및 총포탄(부품에 한정한다)	25200
	분말 야금제품	25911
	금속 단조제품	25912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25913
	그 외 금속 압형제품(가정용 압형제품은 제외한다)	25914

	다) 금속 열처리제품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품 그 외 기타 금속 가공품 톱 및 호환성 공구 볼트 및 너트류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 스프링 금속선 가공제품(와이어로프에 한정한다)	25921 25924 25929 25934 25941 25942 25943 25944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발광 다이오드 기타 반도체 소자 액정 표시장치 유기 발광 표시장치 기타 표시장치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경성 인쇄회로기판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전자 축전기 전자 저항기 전자카드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전자 감지장치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기억 장치(휴대용 저장장치, SSD는 제외한다) 컴퓨터 모니터(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모니터는 제외한다) 컴퓨터 프린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주변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유선 통신장비(부품에 한정한다) 방송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이동 전화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무선 통신장비(부품에 한정한다) 텔레비전(부품에 한정한다)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부품에 한정한다)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음향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6111 26112 26121 26129 26211 26212 26219 26221 26222 26223 26224 26291 26292 26293 26294 26295 26299 26321 26322 26323 26329 26410 26421 26422 26429 26511 26519 26521 26529
의료, 정밀, 광학	방사선 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7111

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치과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안경 및 안경렌즈(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속도계 및 적산계기(부품에 한정한다)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사진기, 영상기 및 관련 장비(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광학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시계 및 시계 부품(시계 부품에 한정한다)	27112 27191 27192 27193 27199 27211 27212 27213 27214 27215 27216 27219 27301 27302 27309 27400
전기장비 제조업(28)	전동기 및 발전기 변압기 방전 램프용 안정기 에너지 저장장치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전기회로 접속장치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일차전지 축전지 광섬유 케이블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전구 및 램프(부품에 한정한다)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8111 28112 28113 28114 28119 28121 28122 28123 28201 28202 28301 28302 28303 28410 28421 28422 28423 28429

	주방용 전기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8511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8512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8519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28520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8901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28902
	교통 신호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8903
	그 외 기타 전기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890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내연기관	29111
	기타 기관 및 터빈	29119
	유압 기기	29120
	액체 펌프	29131
	기체 펌프 및 압축기	29132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29133
	구름베어링	29141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29142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부품에 한정한다)	29150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부품에 한정한다)	29161
	승강기(부품에 한정한다)	29162
	컨베이어 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9163
	기타 물품 취급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9169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9171
	공기 조화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9172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9173
	기체 여과기	29174
	액체 여과기	29175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29176
	사무용 기계 및 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9180
	일반 저울(부품에 한정한다)	29191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부품에 한정한다)	29192
	분사기 및 소화기(부품에 한정한다)	29193
	동력식 수지 공구(부품에 한정한다)	29194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199
	농업 및 임업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10
	전자 응용 절삭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21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22
	금속 절삭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23
	금속 성형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24

	기타 가공 공작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29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30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9241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9242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50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61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69
	반도체 제조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71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72
	산업용 로봇(부품에 한정한다)	29280
	펠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91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부품에 한정한다)	29292
	인쇄 및 제책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93
	주형 및 금형	29294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9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자동차용 엔진	301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3031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30320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30331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30332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30391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30392
	자동차용 신품 의자(부품에 한정한다)	30393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3039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선박 구성 부분품	31114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31202
	항공기용 엔진	31321
	항공기용 부품	31322
	전투용 차량(부품에 한정한다)	31910
	모터사이클(부품에 한정한다)	31920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부품에 한정한다)	31991

비고

1.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2.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재·부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3.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부품으로 본다.

2. 장비의 범위(제2조 관련)

분 야 (한 국 표 준 산업분류번호)	적용범위(장비)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 조업(27)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27212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27213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7216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부품은 제외한다)	27219
	기타 광학 기기(부품은 제외한다)	27309
전기장비 제조 업(28)	그 외 기타 전기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890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부품은 제외한다)	29150
	승강기(부품은 제외한다)	29162
	컨베이어 장치(부품은 제외한다)	29163
	기타 물품 취급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9169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9171
	공기 조화장치(부품은 제외한다)	29172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부품은 제외한다)	29192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199
	전자 응용 절삭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21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22
	금속 절삭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23
	금속 성형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24
	기타 가공 공작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29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30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9242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50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61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69
	반도체 제조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71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72
산업용 로봇(부품은 제외한다)	29280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91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부품은 제외한다)	29292
인쇄 및 제책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93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99

비 고

1. 장비는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 한정한다.
2. 장비 관련 부품은 장비범위가 아닌, 소재·부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2]

인수·합병 등 관련기업의 현황자료 작성요령(제8조제1호 관련)

1. 회사개요
 - 명칭
 - 대표자
 - 소재지(주소 및 전화·팩스 번호를 표기함)
 - 설립 및 등기일자
2. 재무구조
 - 자본금
 - 자본총계와 부채총계(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과 부채액을 포함한다)
 - 경상이익
 - 주주구성 및 주주별 소유주식 수
 - 인수·합병 등을 통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의 실태
3. 경영, 조직 및 임직원 현황
 - 가. 경영
 - 생산설비, 부동산, 유희시설 등의 처리(매각, 폐기) 현황
 - 인수·합병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자산, 불용자산의 현황
 - 인수·합병 등을 통한 품질개선, 원가절감 등의 효과
 - 연구·기술개발에의 투자실적 및 향후계획
 - 나. 조직
 - 기업역량의 소재·부품·장비의 생산·판매부문으로의 집중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조직체계의 변화
 - 연구·기술개발부서의 조직도
 - 다. 임직원 현황
 - 인수·합병 등과 관련한 임원의 현황
 - 고용승계 등 인적자원의 활용상태
4. 인수·합병 등의 기대효과
 - 해당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과 시장점유율의 변화
 - 생산기술 및 연구능력의 향상에 관한 사항
5. 피인수기업에 관한 자료
 - 피인수기업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특화선도기업 선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기업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주생산물	
	자산총계	연구개발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기업규모	업종분야	
기업 현황	핵심전략기술개요		
	매출액	연구개발비	
	지식재산권 보유건수	전문연구인력 수	
	투자유치금액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목록 기재된 각 서류를 최종 확인 후 특화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특화선도기업 선정 관련 전략계획서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그 밖의 신청인은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 3. 특허출원 등록증(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투자조합 등의 투자확인서(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수수료
		없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경우 제출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선정	→	선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호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선정서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소재지 :

유효기간 : . . . ~ . .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 기업을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으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

업체명		설립일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주생산물	
자산총계	백만원	연구개발비	백만원
영업이익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기업규모		분야	
종업원수	총원()명 석·박사()명 학사이하()명		
실무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전자우편	
	전화	팩스	
	핸드폰	회사 홈페이지	
소재지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명세]						(단위: 백만원)
매출발생 기준 연도(전년도)				기업의 총 매출액(A)		
소재·부품 또는 장비명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상호출자제한 기업 중 자기계열사 매출액
연번	제품명	표준산업분류코드	HS 코드	국내매출액	수출액	
1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총계(B)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율(B/A)			%
상호출자제한기업 중 자기계열사 매출액 총계(C)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자기계열사 매출액 비율(C/B)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업으로 확인받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제1절에 따라 전문기업 관리를 위해 제출한 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에 한합니다)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그 밖의 신청인은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문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제 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소재지 :

유효기간 : . . ~ . .

위 기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소재·부품·장비 [] 강소기업
[] 창업기업 선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	-----	------	-----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기업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분야	강소기업	[]	창업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해당 기업의 성장성과 유망성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중소기업부장관의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경우 제출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선정	→	선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처리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처리기관 (중소벤처기업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 선정서

1. 기 업 명 :
2. 대 표 자 :
3. 주 소 :
4. 유효기간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 기업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창업기업)으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재·부품·장비전문투자조합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조합명	업무집행조합원	
	전담운영책임자	조합원 수	
	출자총액	존속기간	
	주소 (전화번호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협의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조합규약 2. 조합원 명부 3.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4.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등록의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또는 중소기업투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등록번호 제 호

소재·부품·장비전문투자조합등록증

1. 조합명:

2. 소재지:

3. 업무집행조합원명:

4. 업무집행조합원 대표자 성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소재·부품·장비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

(앞쪽)

등록번호		장수						
명칭								
			. . . 변경					
			. . . 등록					
			. . . 변경					
			. . . 등록					
존속기간								
. . . ~ . . .			. . . 변경					
			. . . 등록					
			. . . 변경					
			. . . 등록					
소재지								
			. . . 변경					
			. . . 등록					
			. . . 변경					
			. . . 등록					
출자총액								
금 원			. . . 변경					
			. . . 등록					
			. . . 변경					
			. . . 등록					
금 원			. . . 변경					
			. . . 등록					
			. . . 변경					
			. . . 등록					
금 원			. . . 변경					
			. . . 등록					
			. . . 변경					
			. . . 등록					
금 원			. . . 변경					
			. . . 등록					
			. . . 변경					
			. . . 등록					
최초등록연월일 년 월 일 등록								
명칭·출자액란(장)		확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등록번호		출자총액		출자총액	
조합명					
업무집행조합원에 관한 사항					
명칭					
		. . . 변경			
		. . . 등록			
		. . . 변경			
		. . . 등록			
조합출자금액					
금 원					
금 원		. . . 변경			
		. . . 등록			
		. . . 변경			
		. . . 등록			
금 원		. . . 변경			
		. . . 등록			
		. . . 변경			
		. . . 등록			
금 원		. . . 변경			
		. . . 등록			
		. . . 변경			
		. . . 등록			
조합원에 관한 사항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출자금액		출자좌수		원인	
등록연월일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출자금액		출자좌수		원인	
등록연월일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출자금액		출자좌수		원인	
등록연월일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출자금액		출자좌수		원인	
등록연월일					
조합원란(장)		확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인수·합병등 확인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기업체명	인수·합병 등 소요기간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주소	전화번호	
	총자산	매출액	
	주력생산업목	기업체의 규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수·합병등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협의회 설립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회원사수	전화번호	
	주된 사무소의 주소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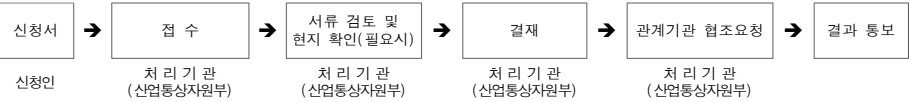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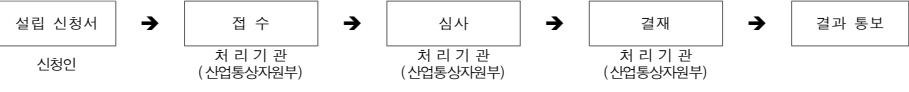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인수·합병등 관련기업의 현황자료에 관한 서류 2. 인수·합병등 계획서 또는 인수·합병등의 계약서 사본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첨부서류	1. 회원명부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3. 사업계획서 4.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재무구조에 관한 명세서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사업화지원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요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된 사무소의 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신청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개요		
	지원 요청내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요청인 제출서류	1. 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계획서 1부 2. 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개발성과를 직접 사업화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또는 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이 참여한 기업과 함께 개발성과의 사업화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경우 제출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 접수 → 검토 → 결재 → 지원 결정 → 통보
처리기관(관계중앙행정기관)

소재 · 부품 · 장비 융합혁신지원단 지원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요청인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된 사무소의 주소	담당자	
		전화번호	
지원 요청 개요	사업명		
	사업 개요		
	지원 요청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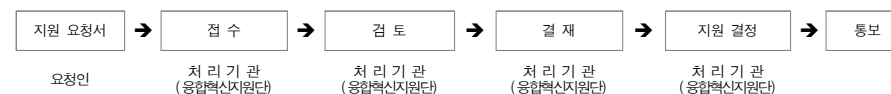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소재 · 부품 · 장비 융합혁신지원단 귀하

처리절차



실증시험·성능검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 기관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개요	소재·부품·장비 개요
	지원 요청내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실증시험·성능검증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소재·부품·장비의 개발배경·연혁·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2. 소재·부품·장비의 성능·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3. 실증시험·성능검증 대상 소재·부품·장비의 운영절차서 4. 실증시험·성능검증 항목·횟수·방법, 이와 관련한 원료·재료 또는 시료의 종류, 국내 가동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5. 국내외의 사용실적(사용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내외의 산업재산권(출원을 포함한 다) 또는 신청인이 해당 소재·부품·장비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 받은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6.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문기관이 실시한 선행기술 조사보고서 7. 실증시험·성능검증을 받으려는 사항 및 현장평가방법을 기술한 서류(기술검증의 경우만 해당 한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지원 요청서	→	접 수	→	검 토	→	결 제	→	지원 결정	→	통보
--------	---	-----	---	-----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관 계 중 앙 행 정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	-----	------	-----

신청 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지정 신청 개요	지정 분야
	사업 내용
	사업 대상지역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추진계획서 1부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전문인력·기술능력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1부	수수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 내용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기재 내용을 말합니다)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사항인 법인 등기사항 내용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경우 제출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이 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지원 신청서	→	접 수	→	심사	→	결재	→	지정증 발급
--------	---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지정번호 제 호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지정중

1. 기관명: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지정 분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_____분야의 신뢰성향상기반구조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지정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이
의
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교육 · 훈련기관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지정신청 개요	지정 분야		
	사업 내용		
	사업 대상지역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00 2001 2002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 관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전문기술인력 양성·훈련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전문인력·기술능력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1부	수수료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의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 내용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기재 내용을 말합니다)	없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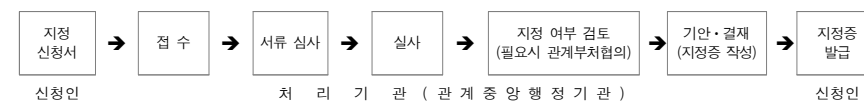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확인사항인 법인 등기사항 내용 또는 사업자등록증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경우 제출 서류에 기재된 정보의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지정번호 제 호

교육 · 훈련기관지정증

1. 기관명: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지정분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및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관으로 지정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직인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 청 인	소속기관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전자우편		
신청내용	특화단지의 명칭			
	지정목적 및 필요성			
	위 치			
	소속 단지명			
	신청단지면적	㎡	소재·부품·장비산업면적	㎡
	주요 입주업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특화단지 지원계획서
2. 신청 산업단지 내의 위치도
3. 도로·용수·전기·통신 등 입지여건 분석 및 기반시설 구축 관련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평가위원회 심의 → 경쟁력위원회 심의 → 지정 고시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협력모델 경쟁력강화 계획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	-----	------	-----

협력모델 유형	[] 협동 연구개발형 [] 공급망 연계형 [] 공동 투자형 [] 공동 재고확보형 [] 기타 협력유형 ()		
------------	--	--	--

신청인 (A)	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기업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수요기업, [] 공급기업, [] 기타()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책임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인 (B)	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기업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수요기업, [] 공급기업, [] 기타()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책임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경쟁력강화 주요내용	품목명	품목별 목표	향후 계획
	1.		
	2.		
	3.		
	기업 간 주요 협력내용 [] 공동 연구개발, [] 기술이전, [] 공급망 연계, [] 시험평가 협력, [] 공동투자, [] 인수·합병, [] 공동 기반구축, [] 물류지원(공동구매, 공동물류저장 등), [] 기타		
	필요한 지원사항 [] 공동 연구개발, [] 신뢰성·양산성능평가 지원, [] 정책자금(융자), [] 세제 감면, [] 기술지원, [] 사업화지원, [] 입지지원, [] 신뢰성 보증, [] 규제특례, [] 기타		
	규제개선 필요 여부 [법 제51조(규제개선의 신청 등)에 따른 규제개선 신청] [] 필요, [] 불필요		

소재·부품·장비 기업 간 상호 협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협력모델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A)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B)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추진단		귀하	

첨부서류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생산 또는 투자 계획 등 경쟁력강화의 세부적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협력모델 규제개선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신청인	회사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책임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협력모델	협력모델 선정일(예정일)			
	품목명			
	주요내용			

신청사유	[]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협력모델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해당 협력모델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협력모델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사유()			

신청내용	규제개선 필요 법령			
	적용대상			
	적용기간			
	주요내용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협력모델 활동을 위하여 규제개선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추진단		귀하	

첨부서류	1. 협력모델 경쟁력강화 계획서 2. 개선을 신청하는 규제의 내용과 신청사유를 설명하는 자료 3. 해당 규제개선이 협력모델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자료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연 락 처	(044) 203-4914